



광 주 시

수신자 [REDACTED] 귀하 (우 01623 서울특별시 [REDACTED])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V]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15777453	접수일 2025. 12. 26.
---------------	-------------------

청구 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쿠팡 곤지암1센터'를 불법 건축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최초 신고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가 이후 합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기 신고를 접하고 현장 조사 이후 경기도 광주시 감사실에 보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청구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최초 신고에 따른 현장 조사 사진 일체 및 불법 판단을 한 경위가 포함된 보고서 - 담당 공무원이 시정조치 예고 후 어떤 사유로 시정조치를 취소했는지에 대한 사유 및 상급기관 보고내용 - 이후 경기도 광주시 감사실에 감사요청을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합법이라는 주장을 이끌어 냈는 지에 대한 회의록과 보고자료 - 경기도 광주시에서 경기도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을 때 경기도에서 보낸 답변 이상. 끝.
-------	---

공개 내용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15777453(2025.12.26.)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 공개결정 하고자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내용 - 청 구 인 : [REDACTED] - 청구내역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416-3번지 건축물 민원 관련 서류 - 공개내역 : 상동 - 비공개내역 : 개인정보 등 - 비공개사유 : 개인사생활침해
-------	--

	6. 수 수 료 : 없음 7. 공개방법 : 전자파일 8.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불임 공개자료 각1부. 끝.
--	---

공개 일시	2026. 01. 09. 11	공개 장소	
-------	------------------	-------	--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0원	② 우송료 0원	③ 수수료 감면액 0원	계(①+②-③) 0원
	납부일 .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개인사생활 침해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내역 : 개인정보 등 - 비공개사유 : 개인사생활침해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경기도광주시장

주무관 [REDACTED] 개발팀장 [REDACTED] 곤지암읍장 [REDACTED]

협조자

시행 곤지암읍-790(2026. 01. 09.)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건축과

전화번호 031 [REDACTED] 팩스번호 0 [REDACTED] / [REDACTED] / 공개 구분

인쇄일자 : 2026. 07. 28. 16:40:58

인쇄자 : [REDACTED]

210mm×297mm[백상지(80g/㎡)]

3/4

유의 사항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